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

1 연금저축 제도개요

구 분	내 용
상품 특징	-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(최소 10년 이상 납입,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)을 충족하는 경우,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- 한편,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,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중도 해지	중도해지 하는 경우, 기타소득세(22%, 지방소득세 포함) 부과 단,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, 해지가산세(2.2%, 지방소득세 포함) 추가 부과
가입대상	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
가입금액	매회 1만원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백만원 이내
소득공제	당해연도 납입액의 100% (한도 400만원)
보수, 수수료	약관,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계약 이전	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

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

구 분	은 행	자산운용사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 품	연금신탁	연금펀드	연금저축	연금저축
납입방식	자유납(1만원↑)	자유납(1만원↑)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(5년↑)	확정(5년↑)	종신, 확정	확정(5~25년)
예금자보호법	적 용	적용되지 않음	적 용	적 용

3 연금저축 세제제도

구 분	저축액 납입시	중도 해지시		일시금 수령시	연금 수령시
		~5년	5년~		
세제종류	소득공제 혜택	기타소득세(22%)		기타소득세(22%)	연금소득세
		해지가산세(2.2%)	-		

※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이자분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
※ 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포함)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※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의제·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가입시 유의사항

□연금저축은 중도해지 하는 경우,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□금융회사(www.kr) 및 협회(www.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